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26
----------	------------

제출년월일 : 2000. 8.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지역에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도에 두는 노사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성 격 : 지역내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기구
- 구 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노동단체 대표, 사용자 단체대표, 자치단체 대표, 노동관서 대표,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주요기능(협의사항)
 - 지역내 노사정 협력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개최하며 출석한 위원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사협력증진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화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3. 도를 대표하는 자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5.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위원은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성실히행의무)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 관한법률

[1999. 5. 24, 법률 제 5,990호]

第1條(目的) 이 法은 勤勞者와 使用者 및 政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勞動政策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協議하고,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勞使政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委員會의 설치 및 기능)

① 勞使政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大統領 소속하에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협의한다.

1. 勤勞者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勞動政策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등의 構造調整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委員會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
5. 勞使政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大統領이 諮問을 구하는 사항

第19條(地域勞使政協議會)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관할지역의 勞使政 협력증진을 위하여 地域勞使政協議會를 둘 수 있다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 8. 6, 대통령령 제 16,51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정위원회 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지역노사정협의회의의 구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노사정협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5. 당해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③지역노사정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